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81
----------	------

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의의원 : 박주용 의원,

서도원 의원, 최재규 의원

1.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일상생활 전반의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었으나, 어르신과 장애인의 경우 활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보격차로 인한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관계 법령에 따라 달성군 내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어르신 및 장애인에 대한 생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으로 한다)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다.
3. “생활 디지털 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정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정보화”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각각 따른다.
5.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다.
6. “정보접근권”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 및 장애인의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어르신 및 장애인의 생활 디지털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3.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4.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교육
5.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에게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홍보) 군수는 어르신 및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군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2024. 3. 26. 일부개정, 2025. 3. 27. 시행)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25. 11. 11. 일부개정, 2026. 11. 12. 시행)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복지법**」(2025. 4. 22. 타법개정, 2025. 10. 23. 시행)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

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 현재 관내에서 진행하는 정보화교육의 경우 연간 주민대상 연간 16명 기준 20회, 직원대상 연간 16명 기준 6회를 진행하는데 35,000천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배움터 교육 사업’ 2025년 12월 운영 결과 달성군의 경우 총 교육인원이 530명 가량으로, 관내 정보화교육인원이 420명을 것을 감안하였을때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판단됨.
- 또한, 상위법령의 필수위임조문으로 명기되지않은 자치사무의 영역으로서, 신설되는 조문의 경우 임의규정을 두고 있음. 향후 세부적인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이 필요한 바, 현시점 기술적인 추계는 어렵다고 판단됨.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박 주 용 (☎ 2292)